하동군의회 규칙 제 14 호

제3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5년 9월 24일

하 동 군 의 회 의 장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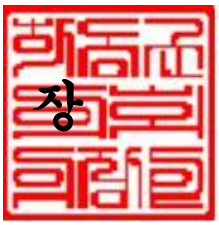

하동군의회 규칙 제 14 호

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제3호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67조제1항 후단 중 “간사가, 간사도”를 “부위원장이, 부위원장도”로 한다.

제68조제3항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70조 후단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의안 등의 상정시기) ① 위원회는 의안 등이 그 위원회에 회부(재회부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.	제59조(의안 등의 상정시기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: 5일	3. ---------- 부위원장과 ---------- -------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7조(심사보고) ①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그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간사가, 간사도 이에 해당하면 제9조제3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보고할 수 있다.	제67조(심사보고) ① 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부위원장이, 부위원장도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8조(회의록) ①·② (생 략)	제68조(회의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와 해당 전문위원이 서명한다.	③ ---------- 부위원장과 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70조(준용규정)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본회의에 관한 제1장부터 제3장까지 및 제8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“의원”, “의장”, “부의장”, “사무과장” 및 “본회의장”은 각각 “위원”, “위원장”, “간사”, “소속 전문위원” 및 “위원회회의장”으로 본다.	제70조(준용규정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부위원장---------- ----------.